

##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특허청 단독형-2차)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특허청장

###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최대 30백만원/社<sup>1</sup> 이내 지원<sup>2</sup>
  1.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
  2.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기업부담금 기준표>

기업 매출액 (19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총 10%	총 15%	총 30%	총 40%	
기업 부담률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지원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투자유치 등 지원(붙임1참고)

### <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sup>1</sup>	추가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II (개선형)	30백만원·3개월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디자인목업·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li> <li>■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li> <li>■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li> <li>■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li> </ul>

1.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 3.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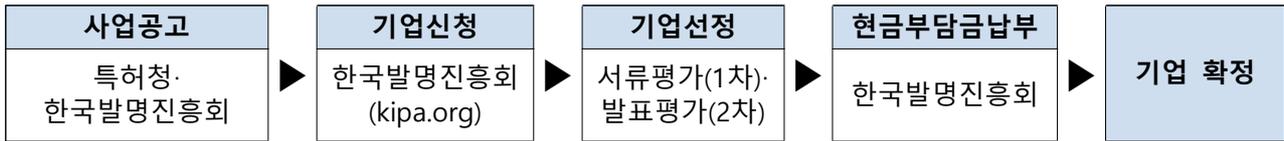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sup>1</sup>한 중소기업<sup>2</sup>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6월 21일(월) ~ 7월 1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http://www.kipa.org))
  - ※ (제출서류) 활용계획서(붙임4), 추가제출서류(붙임5 :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기업 및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18~'19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등)

## 5. 지원기업 선정

- (선정 절차)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 6. 사업 문의

### ○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 김기쁨 PD·전문위원 (02-3459-2931, kimkb@kipa.org)

###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 정인석 계장 (02-3459-2943, inseok@kipa.org)
-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cho@kipa.org)

## 7. 신청시 유의사항

-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 제출서류(활용계획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4, 5 참고)
- 신청서는 온라인에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참고)

-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활용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고도화 II**

- (과제개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신청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수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 절차)

<b>과제 기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디자인 컨셉 및 기능 개선방향 1차 정의</li> <li>*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li> </ul>
▽	
<b>디자인 컨셉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 유사분야 특허검색(①선행특허 분석, ②기술트렌드 파악)</li> <li>• 1차 사용자 조사를 통한 디자인 컨셉 및 제품기능 개선방향 정의</li> <li>•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기능분석 및 검색키워드 추출</li> </ul>
▽	
<b>디자인 개발전략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분야 특허검색 및 분석을 활용한 기능 개선 아이디어 도출</li> <li>•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전략 수립</li> <li>• 2차 사용자 조사 등을 통한 제품디자인 및 기능 개선 아이디어 검증 (①사용성, ②양산성, ③시장성, ④특허등록가능성)</li> <li>• 대상 제품 관련 특허 권리성 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li> </ul>
▽	
<b>제품디자인 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 스케치의 시각화</li> <li>• 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품디자인 개발(3D 렌더링)</li> </ul>
▽	
<b>검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작</li> <li>•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수준의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공</li> <li>• 지원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혜기업 측에서 부담</li> </ul>

## 붙임2

## 기업선정 평가기준

### □ 서류평가 (1차)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40)	일반 현황 (10)	재무건전성 ①유동비율 100% 이상 (2점) ②부채비율 100% 이하 (1점) ③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 5% 이상 또는 영업이익률 7% 이상 (2점)	각 항목(①,②,③) 점수 합계	0~5	
		매출액 규모(사업화 능력)	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3 4 5	
	기술 개발 역량 (5)	연구소 보유여부 * 공인여부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기준	없음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0 1 2	
		R&D과제 수행실적 *(정부(지자체) R&D과제 추진실적, 최근 3년간)	2회 이하 3회 이상	1 3	
	인증 및 수상 (10)	각종 인증<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NEP, NET, ISO 9001, ISO 14001 등> * 사업신청당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함	2건 이하 3 ~ 4건 5건 이상	2 4 6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누계)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 특허기술상)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 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실적	1건 당 2점 (4점 한도)	0~4	
	지식 재산 활용 (15)	지식 재산 등록 현황 (10)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현황(누계) * 등록원부 확인 * 1건당 1점, 10건 이상 10점 만점	1건 당 1점 (10점 한도)	0~10
		직무 발명 보상 현황 (5)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및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 여부	없음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0 3 5
정성 평가 (60)	지원의 적합성 (40)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부합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10 7~8 5~6 3~4 0~2	
		지원사업을 통한 개선 목표의 구체성/타당성 -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이해도 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20 13~16 9~12 5~8 0~4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 * (시장경쟁력, 수출·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10 7~8 5~6 3~4 0~2	
	사업화 가능성 (20)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 활용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有 無)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20 13~16 9~12 5~8 0~4	
<b>평가총점 = 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b>				<b>100</b>	

□ 발표평가 (2차)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가점 (5)	가점 항목별 인정가부 확인	가점항목표 참고	0 ~ 5
제품·기술 우수성 (25)	대상 제품 및 적용 기술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1 ~ 25 16 ~ 20 11 ~ 15 6 ~ 10 0 ~ 5
기업역량 (25)	R&D·사업화 역량 및 경영진의 참여의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1 ~ 25 16 ~ 20 11 ~ 15 6 ~ 10 0 ~ 5
제품시장성 (20)	대상 제품의 시장 규모·확장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 ~ 20 13 ~ 16 9 ~ 12 5 ~ 8 0 ~ 4
과제적합성 (20)	과제규모(금액, 기간), 수행방법 등 사업성격 부합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 ~ 20 13 ~ 16 9 ~ 12 5 ~ 8 0 ~ 4
지원기대효과 (10)	예상되는 지원결과물의 혁신성·파급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 ~ 10 7 ~ 8 5 ~ 6 3 ~ 4 0 ~ 2
<b>평가총점(105점 만점)</b>		<b>105</b>	

□ 발표평가 (2차) 가점항목

가점항목	가점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3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3
○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및 인증기업인 경우	2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2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기준)	1
○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ICT) 지정기업	1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소재 재창업자, 사업장 소재지 기준 (‘21년 관계법령 기준)	1
○ ‘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지원사업(창업진흥원) 사례공모전 수상자 및 데모데이(IR) 왕중왕전 수상자	1
○ 노란우산공제 사업 가입자	1
<b>최대 가점</b>	<b>5점</b>

**1. 신청희망 세부과제**

- (1) 신청희망 세부과제 : 신청을 희망하는 세부과제를 체크, 중복체크 가능

**2. 기업정보**

- (1) 기업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 (2) 대표자명 : 대표자 전부를 기재
-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 (4) 전화번호/팩스번호 : 기업대표 번호 기재
- (5)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체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 (6) 홈페이지 주소 : 자사 홈페이지 주소기재

**3. 담당자 연락처**

- (1) 이름/소속부서 및 직책/전화번호/휴대전화/이메일 : 사업담당자 관련내용 기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사와 함께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갈 담당자 기재

**4. 기업 현황**

- (1) 기업규모 : 중기업, 소기업 여부 체크 (개인사업자는 소기업 체크)
- (2) 기업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단,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예: 2010-07-06)

- (3) 우대가점 여부 : 해당 가점 여부 체크

※ 우대가점 사항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4)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표기
- (5)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를 기재(예 : 장난감 제조, 반도체 이송장비 제조 등)
- (6) 주생산품목 : 해당업체 주요 생산품목 기재
- (7) 상장여부 : 상장/비상장 여부 체크
- (8) 상시 근로자수 : 신청 당시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재

- (9) 자본금 : '19년도 기준의 자본금을 기재
- (10) 수출액 : '19년도 1년간의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결산 재무재표 기준)
- (11) 매출액 : '18년도~'19년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결산 재무재표 기준)

#### 4. 기술·연구역량 현황

- (1) 연구조직 보유형태 :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보유 형태에 따라 체크
- (2) R&D과제 수행실적(2017년~2019년) : 정부(지자체) R&D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 실적을 기재한 경우 협약서 사본을 증빙자료 첨부(자체R&D는 인정하지 않음)

- (3) 인증 취득 현황 : 해당 취득 인증에 체크 (중복 체크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한 인증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5. 지식재산역량 현황

- (1)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있음으로 표기, 그렇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표기

※ 직무발명제도 사내 규정에 대한 사본을 증빙자료 첨부

-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여부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여부 체크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를 증빙자료 첨부

- (3) 특허·디자인·실용신안권 등록 현황 : 등록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을 기재 후 특허등록번호 입력

※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를 증빙자료로 첨부

※ 중소기업(법인 인 경우) : 법인이 최종 권리권자로 되어 있는 특허·디자인·실용신안권

※ 개인기업인 경우 : 개인기업 명의 또는 기업대표 명의의 특허·디자인·실용신안권

※ 전용실시권,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등은 정량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음.

단,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신청은 가능함.

**< 안 내 사 항 >**

1. 본 활용계획서는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2차)」 신청기업의 선정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기술·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세부항목 작성시에는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안내내용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하고자 하시는 세부과제를 모두 표시하신 후, 선택하신 세부과제의 활용계획서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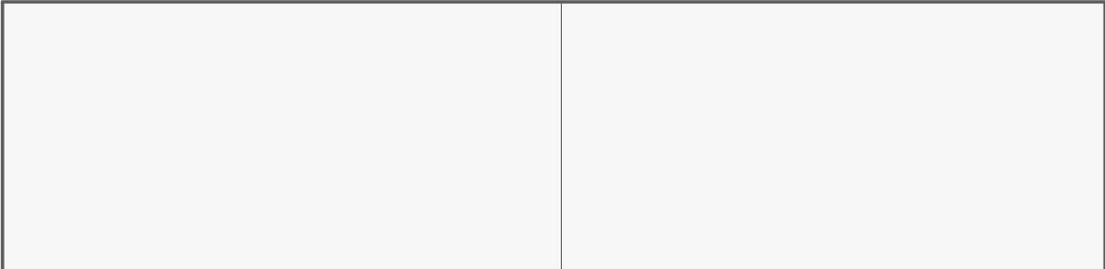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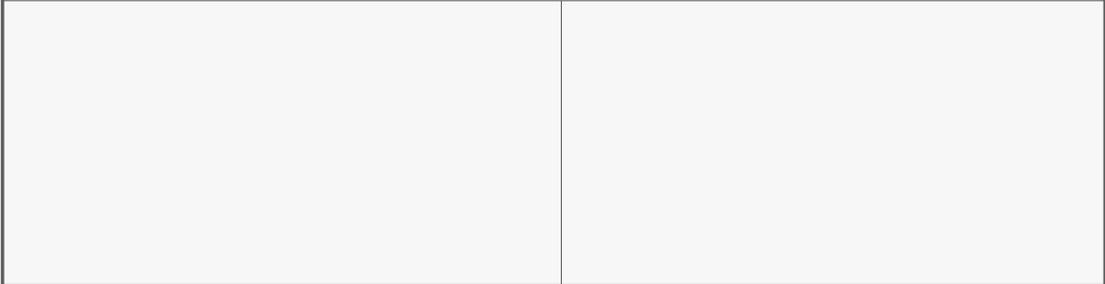
**<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sup>1</sup>	추가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II (개선형)	30백만원·3개월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디자인목업·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li> <li>■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li> <li>■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수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li> <li>■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li> </ul>

1.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2차)

**활용계획서 [제품고도화 과제 II]**

과제 분야	제품고도화 II	과제번호	(미기입)	입찰금액(원)	(미기입)							
		기업소재	※ 00 시 α 도	2019년 매출	○○억원							
대상 제품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  ○ 대상 제품·기술의 개요 - 제품화 정도, 제품의 구성, 개발 기술의 고도성, 제품의 실용성 및 성능수준 등 제품·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전체 도면 및 제품사진 첨부) - 경쟁 제품 대비 자사의 제품·기술 개발 수준 및 차별성 - 제품의 가격, 품질 기타 경쟁력 및 경쟁력 제약 요인 - 해외규격,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 현황											
												
	【그림 1】 대상 제품 사진											
												
【그림 2】 대상 제품 세부 도면												
○ 제품가격(제조가격) : 원 ○ 판매가격 : 원 ○ 제원 : 가로×세로×높이×깊이(mm) ○ 제품 소재(파트별) : ○ 제조방법 :												
○ 대상 제품·기술의 핵심특허(실용신안, 디자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발명의 명칭</td> <td></td> </tr> <tr> <td>등록번호</td> <td>특허 제 00...00 호</td> </tr> <tr> <td>요약</td> <td></td> </tr> <tr> <td>해외특허</td> <td></td> </tr> </table>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제 00...00 호	요약		해외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제 00...00 호											
요약												
해외특허												

<p><b>핵심 니즈</b></p>	<p>※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p> <p>&lt; 디자인 부분 &gt;</p> <p>○ (제품 디자인) 대상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 및 컨셉의 정의(구체적으로 기술)</li> <li>- 디자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목적</li> <li>- 현존 제품디자인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부족함</li> </ul> <p>○ (기능 개선) 대상 제품의 기능 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개발에 따른 제품 기능 및 개선 방향의 정의(구체적으로 기술)</li> <li>- 해당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li> <li>- 현존 제품디자인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고객 또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부족함</li> </ul>																						
<p><b>기업 역량</b></p>	<p>○ 사업화 기반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역량</li> <li>- 경영자, 연구개발, 디자인 인력 등 인적 역량</li> </ul> <p>○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사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제품 관련 내부 디자인, R&amp;D 및 설계 인력, 투입 비용·기간</li> <li>- 대상 제품 관련 자체 진행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디자인, R&amp;D 프로젝트</li> </ul>																						
<p><b>시장 고객</b></p>	<p>○ 시장(Mark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시장 규모, 동향 및 특성</li> <li>-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li> </ul> <p>○ 고객(Custom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제품의 현재 및 미래 고객</li> <li>- 대상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li> <li>-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 또는 사용자의 니즈</li> </ul>																						
<p><b>활용 계획</b></p>	<p>○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양산·판매, 전시회 출품, 해외 진출·수출, 정부·지자체 지원 과제 참여 등</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1608 1406 1827"> <thead> <tr> <th rowspan="2">번호</th>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2">추진일정</th> <th rowspan="2">기간(일)</th> </tr> <tr> <th>시작일</th> <th>완료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예) 금형제작</td> <td>년 월 일</td> <td>년 월 일</td> <td></td> </tr> <tr> <td>2</td> <td>예) 양산준비</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예) 상품출시예정 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개발로 상승되는 이미지</li> <li>- 매출상승, 고용창출, 시장 점유, 수출 증대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li> </ul>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금형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2	예) 양산준비				3	예) 상품출시예정 등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금형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2	예) 양산준비																						
3	예) 상품출시예정 등																						







**I. 지원조건 관련**

Q 1-1

아직 등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출원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1

출원 중인 특허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Q 1-2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2

전용실시권의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실시권 권리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Q 1-3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3

지원대상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상표권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1-4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Q 1-5

일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5

일반 개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 1-6

법인 기업 대표명의로 된 특허를 보유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6

지원 자격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유효한 권리여야 하며,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 명의이거나, 전용실시권이 법인명의로 설정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Q 1-7

신생기업이라 결산재무제표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1-7

결산재무제표는 서류심사시 재무건정성 평가에 활용됨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서류심사시 재무건정성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Q 1-8

동 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던 기수혜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9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이내 동사업으로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제품으로 각 지원과제별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I. 사업 신청 및 운영관련

Q 2-1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2-1

신청기업은 ① 활용계획서, ②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물납부 약속서, ③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기타 서류심사 관련 증빙자료, ⑤ 결산재무제표('18년, '19년)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해주셔야합니다.

Q 2-2

제출 증빙자료 중 '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

A 2-1

등록원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 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권자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http://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